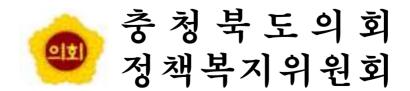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 351회 임시회 2016. 10. 14.(금)

심사보고서

○ 충북 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충 북 여 성 재 단 출 연 계 획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65호 2016. 10. 14.(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10월 7일

- O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변혜정 여성정책관)

가. 제안이유

O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 칭 : 충북여성재단
- O 이 사 회 : 이사 15명 이하(이사장 : 도지사), 감사 2명
- O 사 무 처 : 12명(사무처장, 2팀 1센터) * 대표이사(비상근)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내 사무 공간 활용

O 출연계획 : 1,135백만원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사무환경 조성 : 100백만원

- 운영재원(매년) : 935백만원('17년 기준 추정액)

· '17년 당초 : 200백만원(기본재산, 사무환경 조성 등)

- · '17년 추경: 93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 운영재원은 추경에 여성발전센터 예산 삭감 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O 주요기능

-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
-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O 법적 근거 및 계획안 내용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같은 법 제20조(재정지원),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제3조(재산 및 운영경비) 및 같은 법 제8조(재정지원 등)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법적 절차는 적정함

O 검토결과

-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자율성·다양성·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로 일·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가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동 재단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나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출연금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 충북여성재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여성정책연구 및 충청북도의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보임.
- 다만,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북 여성재단 출연계획안」 1부.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 안 번호 465 제출연월일 : 2016. 9. 27. 제 안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 충북여성재단 설립 개요
 - 명 칭 : 충북여성재단
 - 이 사 회 : 이사 15명 이하(이사장 : 도지사), 감사 2명
 - 사 무 처 : 12명(사무처장, 2팀 1센터) * 대표이사(비상근)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내 사무 공간 활용
 - 출연계획 : 1,135백만원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사무환경 조성 : 100백만원
 - 운영재원(매년) : 935백만원('17년 기준 추정액)
 - · '17년 당초: 200백만원(기본재산, 사무환경 조성 등)
 - · '17년 추경: 93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 운영재원은 추경에 여성발전센터 예산 삭감·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 주요기능
 -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
 -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3. 재단 설립 추진상황

□ 그간 추진현황

○ 민선6기 공약사업 선정 '14. 7월

○ 벤치마킹, 사례·자료조사 및 검토 '14. 7월 ~ '15. 9월

○ 타당성 검토(충북연구원) '15. 12월 ~ '16. 4월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6. 4. 29

○ 행정자치부 협의(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16. 7. 12

구 분	주요 내용
협의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시·도지사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행정자치부 의 견	 여성 정책연구 기능,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고,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추진하는 민간이양 사업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됨 ・다만, 신규로 재단 설립시 재단 본연의 여성관련 사업 인력보다행정지원 인력의 증원이 (향후)불가피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연구원과 통합 운영하는 타 시・도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검토와 보완 필요

□ 향후 계획

○ 조례안, 출연 계획안 도의회 심의 '16. 10월

○ '17년도 예산안 도의회 심의 '16. 11월 ~ 12월

○ 발기인 대회, 창립 총회 '16. 12월

-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 발의 및 임원선임안 심의·의결 등

○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16. 12월

○ 직원 채용(대표이사, 사무처장, 직원) '17. 1월 ~ 2월

○ 재단 출범 '17. 3월

①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브서 - () 선전채과신 선2	여성정책관실 성주류한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ナレナ ツ	여성성잭관실 성수류화[변혜정	장.	기봉	임영택	220-3922

	ı					ı			
기관명	충북여성재단	<u>+</u>							
출자·출연대상		○ 충북여성재단 기본재산 ○ 사무환경조성, 사업비 및 운영비							
출자:출연 사 업 비	구 분 기본재산 사무환경 조성 사업비 및 운영비	기 간 에간액 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본재산 설립일~ 연간 100 100 100 100 시구환경 조성 설립일~ 연간 100 100 100							
출자:출연 필 요 성	연구 및 교 ○ 지역 여성의 설립·운영에	-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여성재 사고자 (다 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도감독 부서 의 견 (총 평)	○ 자율성·다양성·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의 여성정책 추진, 지역형 정책개발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공모·용역사업 참여 등의 장점을 가진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음 ○ 유사·중복되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축소·폐지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특히, 도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단 설립 시 최초 출연되는 기본 재산 1억원 및 사무환경조성비 1억원을 제외한 운영재원은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에 지원되던 예산을 조정하여 출연할 계획임								
첨부자료	○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설립 후 매년 1회 경영평가 실시 예정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설립 후 사업년도 종료 후 매년 추진현황과 실적평가 실시

② 출연금 예산 요구부서 검토의견

- 출연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 민간 주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설립에 필요한 도비 출연
 - 기본재산 : 안정적 재정운영 및 공모사업 참여 등을 위한 기본재산 필요
 - 사무환경 조성 : 재단 사무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 계상
 - 사업비·운영비 : 여성발전센터의 연구,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업무 이관 후 출연금액 재 산정하여 추경에 편성

- 향후 출연금 목적 달성 여부 지속 점검
 -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 결산 심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③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구분	2013년 결산액	예산액(최종) (C)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본재산				100		신규 출연
사무환경 조성				100		신규 출연
사업비 및 운영비				935		기본재산 확보 후 출연예정

* 사업비 및 운영비는 기본재산 확보 후 '17년 추경예산에 여성발전센터 연구 및 교육관련 예산 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계획임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출연의	유사	사업방식	사업의	투자대비	재원분담	비고
명확성	타당성	중복성	효율성	시급성	효과성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①-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 북 여 성 재 단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 *
- 설립 전			기관	형태	출연기관(재	
계 12명 예정 12			정규직 비정규족 12명 예정(사무처) -			직
구분	인원	임기	,	선임방법		비고
이 사 회	15명 이내	2년	·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회 -	구성	
이 사 장	1명	-	· (당연직) 도지사			
대표이사 (비상근)	1명	2년	• 임명방법, 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	
감 사	2명	2년	• 임명방법, 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	
사 무 처	12명	-				
지 전체연구팀(5명) 지 전체연구팀(5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포함						
기타 여성관					분석평가센터사 약	<u>}</u> ,
<u>1</u> 1 1 1 1 1 1			출자・출연 (단위:백만	년액 원)	-	
연도 2014	2015	2016		자산	-	
지자체	-	-	(백만원)		-	
	·수익 <i>-</i>		총비용 -		당기순이 -	힉
	- 설립 전	- 설립 전 기 12명 예정 구분 인원 이 사회 이내 이 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대표이사 1명 가 사 2명 사 무 처 12명 사 무 처 12명 이사(15명 이내) 정책연구 *성별영향분석 - 여성정책연구 · 개발, 기타 여성관련 사업 다 연도 2014 2015 예산액 기자체	- 설립 전	- 설립 전 기관	- 설립 전 기관형태 경규직 12명 예정 12명 예정 (사무처) - 보 인원 임기 선임방법 이사 호텔 대표이사 포함 ·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회 · 결원 시 중원된 이사는 전이 사장 1명 - (당연직) 도지사 대표이사 (비상근) 1명 2년 · 임명방법, 임기 등은 제단 정관 간 사 2명 2년 · 임명방법, 임기 등은 제단 정관 간 사 무처 12명 - '공개채용 원칙(이사회 의전인원 및 채용방법 최종 준 전에 가장(도지사) 대표이사(비상근) - 여성정책연구·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성별영향분 전평가센터 포함 교육 가관적 가원관련 사업 추진 등 문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자산 무체 기단역 그	- 설립 전 기관형태 출연기관(제1 전규건 12명 예정 12명 예정 12명 예정 12명 예정(사무처) - - 구분 인원 임기 선임방법 이 사회 15명 이내 ·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회 구정 이사 한 교육인기 수행 이 사 장 1명 - (당연직)도지사 대표이사 (비상근) 1명 2년 · 임명방법,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 간 사 2명 2년 · 임명방법,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 사 무 처 12명 - ' 공개체용 원칙(이사회 의결에 따라 근무인원 및 채용방법 최종 결정) - 역성정책연구단(5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포함 교육운영팀(6명) - 여성정책연구 · 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임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 등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막원행 기관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 등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구단의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구단의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막위한 기타 여성관련 구단의 기타 이성관련 구단의 기타 여성관련 구단의 기타 이성관련 기타 이성관련 구단의 기타 이성관련 구단의 기타 이성관련 기타 이성관련 구단의 기타 이성관련 기타 이성관련 기타 이성관련

11-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u></u>		출연	1,135,000천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참여욕구 증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 자율성·다양성·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 체계 마련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민·관 소통 역할 수행
-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허브)기능 수행

□ 출연개요

○ 사 업 명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설립일 ~ 해산시 까지

○ 출연금액: 1,135백만원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사무환경 조성 : 100백만원

운영재원 : 935백만원('17년 기준 추정액)

□ 여성조직 역할 분담

- 효율적,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재단 확대
 - 기능 중복되는 여성발전센터 역할 축소·폐지, 재단으로 일원화
- 여성조직 역할 분담

여성발전센터

- 연구·개발
- 여성인력 교육
- 여성관련 사업 추진
- 시설관리, 행정지원

2016년

여성발전센터

- 시설관리, 행정지원 충북여성재단
- 연구·개발
- 여성인력 교육
- 여성관련 사업 추진

2017년

여성재단

- 연구·개발
- 여성인력 교육
- 여성관련 사업 추진
- 시설관리, 행정지원

2018년 이후

□ 산출기초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합계	1,135		
기본재산	100	- 100,00천원 × 1회 = 100,000천원	
사무환경	100	- 홈페이지 구축 = 30,000천원 -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 사무용 집기구입 등 = 20,000천원	
운영재원	935		
인건비	469	사무처 직원 12명 (기본급 및 수당, 법정충당금 등 포함)	
운영비	106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사업비	360	- 여성정책조사연구, 양성평등관련 사업, 여성인력개발 교육 등	

○ 연도별 출연 예상액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도비 출연금	5,046	1,135	952	969	986	1,004

□ 기대효과

- 민간 참여형 여성정책 추진으로 다양화, 세분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 발 및 민·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 공공부문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창의적 신규사업 발굴, 공모 및 용 역사업 참여 등 자체 수익사업 발굴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여성정책연구·개발, 여성인력 교육,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관련 부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전국 시·도 중 충북에서만 사업소에서 여성정책 연구·개발
 - ·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 재단 13개, 지방연구원 2개, 도 사업소 1(충북)
-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여성단체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재단 미 승인시 재검토 및 재단설립 요구 예상